

배포 2023. 8. 22.(화)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3. 8. 23.(수) 11:00

(지면) 2023. 8. 23.(수) 11:00

“2023년은 교권 회복의 원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만든다.

-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 및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와 구분
- 교육활동 침해학생 즉시 분리,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등 추진
-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강화 및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8월 23일(수)에 발표한다.

‘교권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유·초·중등·특수)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폭넓게 수렴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한 종합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금까지는) ‘사생활의 자유’ 강조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
(앞으로는)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 분리 보관
- (지금까지는) ‘차별받지 않을 자유’ 강조 → 칭찬도 차별로 인식하여 효과적 수업 불가
(앞으로는) 칭찬, 상 등을 통한 학생의 동기부여
- (지금까지는) ‘휴식권’ 강조 →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 곤란
(앞으로는) 주의, 지시를 통한 적극적 수업 참여 독려

▲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지난 17일(목)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한다. 또한 유치원도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고시 해설서를 개발하여 단위 유치원의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유치원 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지침을 마련한다.

▲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한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 (사례, 경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 예고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금까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 및 조사·수사
(앞으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
- (지금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소극적 운영 및 제한된 개최 요건
(앞으로는) 피해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교장의 사안 은폐 축소 금지 의무화
-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교원이 특별휴가로 회피, 침해학생 제재 조치 미흡
(앞으로는) 침해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 조치사항 미이행 시 가중 조치,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기재
- (지금까지는) 단위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시도별 교원배상책임 보장 범위의 편차 존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 한정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시도별 상향평준화된 교원배상 책임보험 모델 도입,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강화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사항) 또한,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피해교원이 요청 시에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하여 보고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교원지위법 개정 사항)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한다.(교원지위법 개정 사항)

▲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교원지위법 개정사항)하여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9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여 2024년부터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두텁게 지원한다.

3.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 제기
(앞으로는) 교원은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민원 대응팀이 접수·배분 등 체계적으로 응대
- (지금까지는) 단순·반복적 민원도 학교 구성원이 일일이 직접 대응
(앞으로는) 나이스, 인공지능(AI) 챗봇 등을 통해 자동 및 비대면 처리
- (지금까지는)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미흡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유형 신설 및 제재 조치(특별교육 등) 마련,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는 교육청에서 고발

- (지금까지는) 개별 연락을 통한 준비되지 않은 상담이 다수
(앞으로는) 사전 예약 과정을 통해 '질 높은 상담'으로 전환

▲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사항). 또한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교원지위법 개정사항)

▲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한다.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한다. 또한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을 학부모에게 보급하며,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운영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운영하여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하여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교원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보통합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히고,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주요 변경 사항

【별첨】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담당 부서 <총괄>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최보영 (044-203-6480)
			교육연구관	김명련 (044-203-6487)
			사무관	백봉현 (044-203-6481)
			교육연구사	조수원 (044-203-6488)
			교육연구사	허혜정 (044-203-6484)
			주무관	안병희 (044-203-6482)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책임교육지원관	책임자	과장	문진철 (044-203-6972)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민 (044-203-6987)
	책임교육지원관	책임자	과장	김새봄 (044-203-6062)
	인성체육예술교육과	담당자	사무관	최영서 (044-203-6995)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책임자	과장	이용학 (044-203-6443)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교육연구관	이준호 (044-203-6450)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책임자	과장	정윤경 (044-203-6521)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044-203-6483)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책임자	과장	김선미 (044-203-6554)
	특수교육정책과	담당자	교육연구관	진창원 (044-203-6563)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책임자	과장	최화식 (044-203-6657)
	교육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예일 (044-203-6662)
	책임교육지원관	책임자	과장	정일형 (044-203-6239)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	교육연구사	이영웅 (044-203-6501)
	대변인	책임자	팀장	장세은 (044-203-6820)
	디지털소통팀	담당자	교육연구사	전구슬 (044-203-6588)
<교원과 학부모 소통관계 개선>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책임자	과장	이용학 (044-203-6443)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교육연구관	이준호 (044-203-6450)
	대변인	책임자	팀장	장세은 (044-203-6820)
	디지털소통팀	담당자	교육연구사	박강현 (044-203-6589)
	책임교육지원관	책임자	과장	문진철 (044-203-6972)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자	교육연구사	여인경 (044-203-6984)
	책임교육정책관	책임자	팀장	염기성 (044-203-6681)
	모두의학교 TF	담당자	교육연구사	김대권 (044-203-6698)
	책임교육지원관	책임자	과장	유희승 (044-203-6770)
	기초학력진로교육과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도영 (044-203-6743)
보육교사 관련	디지털교육기획관	책임자	과장	김새별 (044-203-7055)
	디지털인프라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서영균 (044-410-1276)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책임자	과장	오신종 (044-203-7202)
	교원교육과정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김관중 (044-203-720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책임자	과장	유보영 (044-202-3540)
	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성지은 (044-202-3552)

교권 회복 및 보호, 확실히 달라집니다



교권 - 학생 인권 균형

교권 확립을 위한 유소중등 고지 마련

- 「초·중등교육법」(22.12.)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3.6.)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23.9.)
-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고시」 제정(23.9.)

시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원

- 7개 시·도 제정 및 시행 중
- 시·도별 조례 개정(학생의 권리와 책임 균형) 지원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판단
- 아동학대 수사, 조사 시 교육계 의견 반영 미흡
- 조사, 수사 개시 시 쉽게 직위해제 처분

-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와 구분
- 조사, 수사 개시 전,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 불합리한 직위해제 관행 개선

단위학교 대응역량 강화

- 교권보호위원회 소극적 운영
- 학교장의 교육활동 보호 의무 미흡
-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부족

- 피해교원 요청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학교장의 은폐, 축소 금지 의무 부여
-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활동 침해 대응조치 강화

- 교육활동 침해 시, 즉각적 조치 권한 부재
- 제한적인 특별교육 조치 의무 시행(전학)
- 조치사항 미이행 시 제재 조치 미흡
- 경각심 유발, 책임감 가중 조치 부족

- 침해학생 즉시분리 및 우선조치
- 특별교육 의무조치(학생, 학부모) 확대(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 조치사항 미이행 시 가중조치(출석정지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학교생활기록 기재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 단위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원
- 시·도별 교원배상책임 보험 지원범위 편차
- 상호존중 문화 부족
- 보육활동 보호 법적근거 미흡

- 교육지원청으로 교권 보호위원회 이관
-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및 심리적 회복 지원 확대
- 시도별 교원배상 책임보험 보장범위 상향평준화 및 위탁 근거 마련
- 교육 3주제 상호존중 문화 조성
- 영유아보육법 개정

교원- 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학부모 책임성 강화

- 학부모 책임성 근거 미흡
- 학부모 민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 부재
- 학부모 제재조치 미흡
- 보육활동 침해유형 부재

- 학부모등의 책임성 근거 마련
- 학부모 민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유형 신설
- 학부모 제재 조치 마련
- 보육활동 침해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학부모 상호이해 증진

- 학교생활 규약안내 부족
- 학부모교육 부족
-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미흡

- 학교생활 규약 안내자료집 제공
- 학교장 중심 학부모 특강
- 학부모 교육상담 가이드라인 제공 및 학부모교육 활성화
- '모두의 학교' 캠페인 등 교권존중 사회적 문화 조성

민원 대응 체계화

- 교원 개인이 민원을 직접 응대
-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 부족
- 온라인 민원시스템 부재

-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
-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부여
- 민원대응팀으로 창구 일원화
- 방문 사전 예약제
- 온라인 민원 처리